

판결문 공개시 비실명화작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김 홍 화*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관련 판례
- III. 우리나라 현황 및 외국의 입법례
- IV.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V. 맺으며

I. 들어가며

최근 법원에 판결문 공개를 촉구하는 변호사, 변호사협회, 로스쿨 교수회 등의 요구가 많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원은 비실명화작업¹⁾을 통하여 판결문을 공개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약간의 수작업이 있지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계를 통한 작업이 대부분이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완벽한 작업은 없다. 즉 비실명화작업을 통한 판결문 공개시스템이 작동·시작된다면 작게나마 법원의 과오로 인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하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건이며 당해 피해자는 공보판사 등의 관련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1. 선고 2008가소36017 판결에서는 피해자를

*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법학박사.

1) 주소, 주민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작업을 말하나 각 나라마다 비실명화작업의 방식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의 비실명화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이라는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판결을 비실명화 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은 전달되어야 할 것이므로 복수의 당사자의 이름이 상호연계성을 지녀야 하고 주소 등에 대한 수정 등이 있어야 한다. 특히 형사 판결의 경우 구체적 범행 동기 및 범행 당시 정황까지 적시되므로 사건관계자의 인적 사항을 비실명처리하더라도 사건관계자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굉장히 예민한 논쟁거리이었다.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가장 최근 판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5가단5072371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현재 후자의 사건은 항소심 계류 중이며 앞으로 판시되는 상급심 판결을 두고 볼 일이나 제1심판결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또한 장래에 판결문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서 이 판결이 판단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도 재고해 본다.

II. 관련 판례

기존에는 판결문 공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가 직접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판례가 아예 없었다. 아주 희귀하게 아래 2개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사안이 다르나 가장 최근 판례인 1. 판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즉 위자료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이 판례는 항소되어 아직 항소심에 계류 중이고 항소심의 판단을 두고 보아야 하지만 제1심판결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앞으로 판결문이 공개가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실명화 작업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제하는 소송을 해결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2. 판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재판부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제3자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도 중요하다. 즉 해당 재판부는 가족사 등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보고 단지 몇 명의 지인이 알 수 있다는 점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지인이 안 정보에 전파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 점에서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1.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²⁾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5가단5072371 판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 대한민국이 2017. 3. 7.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1) 사실관계

원고 M과 S는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이다. 결혼 초부터 남편의 계속된 알코올 중독, 여자, 재산탕진 등의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문이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하급심 판결집에 게재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었고 법원행정처가 인터넷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판결문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발간된 하급심 판결집에 게재된 판결문들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위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판결문의 내용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 표시는 비실명으로 처리되었으나 사건본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자 M(1984.12.22.生), 자 S(1986.1.9.生)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판결문은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위 판결문을 검색하여 복사해간 사람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성명과 성년월일이 표시된 채로 여러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되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판결문의 원고들 표시를 비실명으로 처리한 사안이다.

2) 판단

(1) 적용 법리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고³⁾,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⁴⁾

나. 공무원의 법령 위반 범위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⁵⁾

(2) 해당 법원의 판단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원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가사사건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할 것

3) 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42789 판결.

4) 헌법재판소 2005.7.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결정.

5) 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인데, 대국민 종합법률서비스를 위한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과 생년월일이 그대로 노출된 이 사건 판결문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사이트에 그대로 게시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불특정다수가 위 판결문에 접근하여 열람, 복사 후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법원의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하였다.⁶⁾

나. 위법성 인정 여부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⁷⁾ 법원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공개한 행위는 위법하다.⁸⁾

-
- 6) 이 사건 사이트가 개설된 1998.경 당시 비록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법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헌법상 권리인 점,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인터넷을 통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교환 등에 따르는 위험으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 구법을 대체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와 관련조항, 특히 재판상 이혼과 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등 사건내용은 구 가사심판법(1963.7.31. 법률 제1375호로 제정되어 1963.10.1.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가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제8조와 가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성명, 연령 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신문, 잡지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개인의 사생활로서 강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 7) 원고들은 국민의 관심을 받을만한 공적인 존재가 전혀 아닌 점, 판결문의 공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나, 국민이 판결문 공개를 통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판결에 나타나는 개인의 신상이 아니라 법원이 사안에 따라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무슨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이유는 없는 점, 원고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그 정보가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및 그로부터 파생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 8)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다. 손해의 발생 여부

이 사건 판결문에 표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열람, 복사를 통하여 유출되었으므로, 추가복제 및 2차 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이 사건 판결문에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타인에게 밝히고 싶지 않을만한 원고들 부모의 이혼 경위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노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를 도용될 우려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다른 개인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이 있어 더 큰 피해 우려도 있는 점, 법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유출 이후에 이 사건 판결문에서 원고들 표시를 비실명처리하는 조치를 취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보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⁹⁾

(3) 소결

비록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지만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우선 앞으로 구동될 비실명화작업으로 인한 판결문 공개가 완벽한가의 문제를 살펴보게 한다. 만약 완벽한 법률인공지능(A.I.) 러닝머신이 존재하여 비실명화작업을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고의나 과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특히 대부분 과실의 인정 여부가

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9) 다만, 이 사건 판결문이 처음 공개된 1987년경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이트에 위 판결문이 게시된 1998.경 시행되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법부에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판결문 공개절차에 있어서 비실명처리에 대한 별다른 지침이 없었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비실명화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논쟁이 있는 상황이어서 담당공무원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에 이미 게시된 수많은 판결문의 비실명화 부분까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점, 원고들에게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충격 외에는 실제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원고 S 씨의 경우에는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여 그 이후로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 점 등도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M 씨에 대하여는 100만 원, 원고 S 씨에 대하여는 50만 원을 인정하였다.

문제의 핵심이다.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과실의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작업과 관련된 공보판사 등 공무원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공보판사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각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실수를 과오로 인정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판결이다. 물론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위자료 인정이 쉬워지면 판결문 공개에 대해 법원이 가지는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문제점도 있기는 하다.

2.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판결¹⁰⁾

1) 사실관계

서울행정법원 관할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사건의 판결문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원고의 아버지 그리고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의 어머니에 관한 가족사가 실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 법률신문에 보도되었고 그 무렵 법률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다. 게재·보도된 판결문에는 원고의 이름이 “B”로 대체되었는데 판결문 인정 사실란 증거거시 내용 중에 증인의 이름으로서 표시된 원고의 이름은 실명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안이다.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1. 선고 2008가소36017 판결; 이 사건은 2008년 11.21. 선고되고 같은 해 12.16. 확정된 사안이다.

2) 판단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이 사건 판결문 중 증거거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특히 위 가족사가 실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A, B, C 등으로 비실명처리되어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관련되어 있는지 곧바로 알 수 없는 점, 또한 원고의 실명이 이 사건 판결문에 나타나 있기는 하나 위 가족사에 관한 사실인정 부분과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증거거시 부분 중에 증인의 이름으로서만 나타나 있을 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가족사를 알고 있어 이에 관하여 증언한 사람이라는 정도만 추측할 수 있을 뿐 실제 위 가족사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바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위 가족사에 관한 실시 중에 관련된 인물들의 일부 인적사항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에 불과하여 이를 단서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상명세에 관하여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원고가 B라는 인물에 해당하는지 알아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3) 소결

위 판결은 원고가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안상 충분히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만하고 행정법원 공보판사의 중과실은 없더라도 경과실은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어 공무원인 공보판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대한민국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견해가 있으며¹¹⁾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물론 공보판사 즉 비실명화작업에서는 그 작업을 책임지는 자인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중과실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11) 김용수, “판결문 공개와 비실명화 위반에 따른 법률관계”, 「관례연구」 제23집, 2009.12, 서울지방변호사회, 223면.

Ⅲ. 우리나라 현황 및 외국의 입법례

1. 판결문 공개를 위한 비실명화작업의 근거

1) 헌법 규정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정하고 있고 제109조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 공개에 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¹²⁾ 또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도 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상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2) 내규 규정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재형 2014-2)”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 실무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래 ‘우리나라 현황’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본다.

3)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및 조화의 문제

언뜻 보아도 헌법상 판결문 공개의 근거 규정과 개인정보보호와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판결문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데 판결문 공개상 생길 수 있는 사생활 보호라는 또다른 기본권과 상충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며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

12) 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헌법재판소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등.

본권으로서¹³⁾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한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여 국민의 알 권리(정보공개 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으로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석),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제량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¹⁴⁾

따라서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자유롭게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변경하는 것이 알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모두 조화롭게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견해¹⁵⁾에 동의한다.

2. 우리나라 현황

1) 담당기관

대법원 소속 법원도서관이 판결문 공개를 하는 담당기관이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에서는 이미 많은 수의 판결문 공개를 위한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정작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를 못하고 있으며 성범죄나 가사사건 등 민감한 사건을 제외하는 국민이 동의하면(법이 개정된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판결문 공개가 가능하다고 가장 최근 언론에 법원도서관장이 밝혔다.¹⁶⁾

2) 비실명처리작업에 관한 실무 현황

13) 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14) 헌법재판소 1991.9.16. 89헌마165 결정, 헌법재판소 2007.1.25. 선고 2005헌바96 결정.

15) 임준규, “온라인상에서의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Law & technology』 제10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14, 71면.

16)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8354(2017. 2. 21.자 내일신문 뉴스 게재) 참조; 여기에서 현재 법원도서관장은 법원이 공개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도 공개를 원하고 이미 판결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를 가로 막고 있으니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하고 있다.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재형 2014-2)”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실무¹⁷⁾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

(1) 비실명처리의 범위 및 방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준 제3조에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법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모든 판결서 등을 비실명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비실명처리의 범위는, ① 법관, 검사의 성명을 제외한 사건관계인¹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처리를 하고 ②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성명에 준하는 것, 연락처, 금융정보 등도 비실명처리를 하고 있다(제4조).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다. ①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영문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여 중복되지 않게 비실명처리하고 ② 당사자의 경우 성명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법인 주소, 대표자 주소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있다. ③ PDF 파일 등의 경우에는 [X] 등을 사용하여 비실명처리하고 있다(제5조).

가. 주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처리 방식(제7조)¹⁹⁾

17) 아예 처음부터 비실명을 판결문에 쓰도록 원칙으로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개인정보는 모두 재판기록에만 기입해 두었다가 집행 시에만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으나(박경신, “판결문의 공개: 그 필요성과 제안”, 「사법감시」 통권 제27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2006, 4면 참조) 집행 시 본인 확인 가능성 여부 등의 문제가 있어 실행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18)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2012-2에서 2014-2로 개정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에서는 사건관계인의 정의에 참가인, 지배인, 선정자, 감정인 등 민사 등 판결서에 등장할 수 있는 지위를 추가하였다(제2조).

19)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소의 경우, 시·군·구 다음부터 지번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실명처리한다. 주소에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등이 포함된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표시 앞 고유한 이름 부분까지를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하고, 고유한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건물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한 뒤에 ‘건물’이라는 명칭을 부기하여 표기한다.

<예시>

*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5동 201호 * 서울 강서구 (강서대로 1145 화곡)빌딩 407호 ⇒ 서울 강서구 M빌딩 407호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비빌) 2동 1701호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2동 1701호

나.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처리 방식(제8조)²⁰⁾

다. 별지에 기재된 개인정보도 원칙적으로 본문과 동일하게 비실명처리하되, 판결서 등의 중요 부분이 아닐 경우는 별지를 생략할 수 있다(제9조)

(2) 열람·복사의 제한

그러나 그 제한은 있다(제6조).

즉 ① 제1심판결서 등의 비실명 표시는 항소심, 상고심 등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② 항소심, 상고심 판결서 등에서 새롭게 비실명처리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기존의 알파벳 대문자의 다음 순서 대문자로 표시한다.

③ 재심판결서의 비실명처리는 재심대상 판결서가 이미 비실명처리되었을 경우 재심대상 판결서의 비실명 표시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심대상 판결서를 먼저 비실명처리한 후 그 비실명 표시를 재심판결서에서 그대로 유지한다.

3. 외국의 판결문 공개를 위한 비실명화작업

1)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판결 등 다양한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권을 인정한다.²¹⁾

20) ①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등은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실명처리한다.

<예시>

* 피고인은 경기 24너1000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 피고인은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311-04-00000)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②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처리한다.

<예시>

* 공소의 김호동(820807-110000)에게 전달하여 ⇒ 공소의 V에게 전달하여

21) 미국 법원은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할 법을 알아야 하고 법의 일부인 판결과 법원의 해석, 그 근거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Banks & Bros. v. West Publishing Co., 27 F. 50, 57(C.C.D.Minn.1886)).

그러나 부정한 목적, 가령 호기심을 위한 것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목적의 접근은 제한이 있다. 이혼소송, 명예훼손, 입양사건, 경미한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사건 등의 재판의 기록은 판결문을 제외하고는 어떤 접근도 허용되지 않는다.²²⁾

2002년 마련한 모범안(CCJ/COSCA Guideline)이 대부분 온라인 공개에 영향을 미치고 모범안은 법원, 당사자, 일반인에 대해 다른 온라인 접근권을 부여하면서 종전과 같이 일반인에 대해 종이재판기록과 거의 유사한 온라인 접근권을 부여하고 있다.²³⁾ 그러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 접근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사사건, 가정폭력, 스토킹, 접근금지 민사사건의 피해자들의 주소, 전화 번호를 비롯한 연락처, 수사기관 근무자를 제외한 사건들의 증인들의 연락처, SNS이나 계좌번호, 기타 재무관련 정보나 개인식별번호, 비자발적 누드사진, 특정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나 증인의 사진, 음란 사진 기타 서류, 의료기록, 최종 판결이나 법원 명령을 제외한 이혼, 자녀양육권, 양육비, 접견권, 파양 등과 관련한 가사사건, 친권박탈 관련 소송, 특정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이름 등이 대상이다.²⁴⁾

2) 독일의 경우

독일의 경우 판결문의 공개에 대한 범위, 소송당사자의 비실명처리를 직접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독일 기본법상의 기초와 독일 법원조직법(GVG) 제169조 및 유럽인권협약(EMRK) 제6조 제1항이 재판 공개와 관련되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은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함께 기본법 제2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해야 하고²⁵⁾ 개인정보가 구체적인 경우²⁶⁾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²⁷⁾

22) Sanford v. Boston Herald-Traveler Corp., 156, 61 N.E.2d 5 (1945), Stevenson v. Hearst Consol. Publications, Inc., 214 F.2d 902 (2d Cir. 1954).

23) Alan Carlson & Martha Wade Steketee, Developing CCJ/COSCA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o Court Records: A National Project to Assist State Courts, 2002, § 4.10, 4.20.

24) 임준규, 앞의 논문, 67면.

25) Gerhard Knerr, "Die Veröffentlichung von Namen i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N.G. Elwert Verlag Marburg", 2004, S. 417.

26) 가령 국가의 존립과 기능유지, 내외적 안전, 공적 질서, 외국·국제 조직과의 협력관계 등의 경우를 말할 것이다.

한편 과거에는 공개되는 판결문에 성명을 비실명화하지 않았지만 70년대 이후에는 당사자의 성명을 포함하는 주소 등 개인정보는 대부분 기재되지 않고 비실명화하는 추세이다.²⁸⁾ 그러나 모든 판결문이 그런 것은 아니다. 특정인물 등의 이름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판결문에 기재되어 공개되기도 한다.²⁹⁾

3)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종합 법률정보 검색 사이트인 <http://www.legifrance.gouv.fr>³⁰⁾을 통해 대다수의 판결을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집 발간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요 판결을 공개하는데 중요하고 획기적인 판결만 게시하여 검색하게 하고 있다. 물론 법관들은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판결 전부를 검색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형태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³¹⁾ 한편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가사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IV.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건은 우선 피해자 특정화가 가능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1. 선고 2008가소36017 판결에서 전제가 되는 부분이며 핵심 판단 요소이었다.

27) Gerhard Knerr, 앞의 논문, S. 88.

28) Gerhard Knerr, Die Namensnennung bei der Publikation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JurPC Web-Dok., 73/2004, Abs. 2.

29) 독일의 판결문은 법원에서 판결집 형태로 출판되고 법학 전문 서적, 회보, 온라인 출판물의 형태 등을 통해 공개된다. 위 판결문 공개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판결문 공개에 따른 서비스 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700여 개 이상의 법학 전문지뿐만 아니라 Juris, Beck-online, Lexis-Recht 등 상용 법률정보포털업체들도 이런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30) 개인정보에 관하여 가사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등을 선별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한다.

31) 임준규, 앞의 논문, 68면 재인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 중 증거거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특히 위 가족사가 실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A, B, C 등으로 비실명처리되어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관련되어 있는지 곧바로 알 수 없는 점, 또한 원고의 실명이 이 사건 판결문에 나타나 있기는 하나 위 가족사에 관한 사실인정 부분과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증거거시 부분 중에 증인의 이름으로서만 나타나 있을 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위 가족사를 알고 있어 이에 관하여 증언한 사람이라는 정도만 추측할 수 있을 뿐 실제 위 가족사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바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위 가족사에 관한 실시 중에 관련된 인물들의 일부 인적사항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에 불과하여 이를 단서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상명세에 관하여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원고가 B라는 인물에 해당하는지 알아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위에서 간단하게 외국의 입법례를 보았지만 이혼 사건 등 가족법과 관련된 판결문은 특히나 외국에서도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강하게 인정한다. 그만큼 보호되어야 하는 사건이고 예민한 사실관계를 이룬다. 위 경우 B를 아는 몇 명의 지인이라면 충분히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사의 문제인 만큼 지인들에 의한 전과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반인의 합리성에 바탕을 둔 자이라면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 특징은 쉬운 문제라고 본다. 특히 현대의 SNS 등의 발달로 더욱 예상하기 쉬울 것으로 보여서 손해의 발생 여부를 직관할 수 있다. 전과가능성이 있었는지도 판단해 보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관의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5가단5072371 판결이 갖는 의미가 크다. 법관이 사실인정을 판단하기 나름이나 만약 비실명화작업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피해자 특정화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는 적어져야 할 것이다.

2. 비실명화작업상 과실 인정 여부

1) 주의의무 인정 여부

비실명화작업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판결문 공개를 위한 작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는지의 유무로 연

결된다. 관련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본다. 우선 법령을 보자면 판결문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들 수 있다. 헌법상 규정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 본 자세한 규정인 대법원 예규를 보더라도 관련 공무원은 당연히 비실명화작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사생활을 지켜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 기타 내규로도 그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겠다.

2) 관련 공무원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과실로 볼 수 있다. 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려면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의 중과실을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판결을 보더라도 각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과실을 거의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차원이나 관련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은 비실명화작업을 하는 관련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IV. 맺으며

외국의 예를 살펴보았지만 판결문 공개가 시대의 흐름이다. 법원도 2012년 이래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판결문 공개를 위한 각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³²⁾ 국회의 입법부작위와 관련하여 법령의 충돌 등의 문제로 판결문 공개가 늦어지고 있으나 법원 내부의 이익을 위한 것

32) 법조계 관련자는 판결문 공개뿐만 아니라 판사들이 법리 적용 등을 위해 이용하는 코트넷 상의 시스템, 즉 파이어 볼(검색어란)에 핵심 단어 몇 부분을 입력하면 유사 판결문이 검색되는 시스템까지 요구하는 일부가 있으나 현재 여기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아님은 분명하다.³³⁾ 그렇다면 판결문 공개 여부는 시간문제이다. 공개는 하되 언제냐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판결문 공개작업의 핵심은 비실명화작업이 얼마나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이다. 현재의 기술을 고려해 본다고 해도 공개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든다. 판결문 공개가 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비실명화작업의 미흡이나 기타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5가단5072371 판결의 사안이다. 피해자의 특정, 손해의 발생 등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민사책임을 인정한 판례로서 의미가 크다. 가까운 장래에 비실명화작업으로 인한 민사적 책임 즉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송이 증가할 것이다. 비실명화작업이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의 특정화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존재하는 법령 및 내규 등으로 공보판사 등의 공무원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 2017.05.15. / 심사완료일 : 2017.06.12. / 게재확정일 : 2017.06.15.

33) “비실명화 없이 그대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외국의 사례가 있고 판결화된 이상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공적인 정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자면 비실명화 문제를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그 논의와는 별개로 어떤 경로로든 간에 비실명화된 판결문에 대해서만큼은 널리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인데도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비용과 인력을 들여 생성된 방대하고 소중한 자료들이 정보로 이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최광석, “판결문 공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법률신문사 제4065호, 2012.9. 11면)라며 간접적으로 법원의 부작위를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배원, “판결문의 공개 확대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47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8.
- 김용수, “판결문 공개와 비실명화 위반에 따른 법률관계”, 「판례연구」 제23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9.12.
- 김정범, “판사명단 공개보다 판결문 공개해야”, 법률신문 제3528호, 2007.
- 김평우, “판결문 공개없이 선진사법은 없다”, 법률신문 제3816호, 2010.
- 박경신, “판결문의 공개: 그 필요성과 제안”, 「사법감시」 통권 제27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2006.
- 임준규, “온라인상에서의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Law & technology」 제10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14.1.
- .
- Alan Carlson & Martha Wade Steketee, *Developing CCJ/COSCA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o Court Records: A National Project to Assist State Courts*, 2002.
- Gerhard Knerr, “Die Veröffentlichung von Namen i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N.G. Elwert Verlag Marburg”, 2004.

[국문초록]

판결문 공개시 비실명화작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김 홍 화*

현재 범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대한 열망이 높다. 이에 맞추어 대법원은 해당 등기소 등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비실명화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문 공개 준비를 하고 있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령 및 내규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있으나 수많은 판결문 공개작업에서 법원이 완벽하게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관한 판결 중 하나는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또다른 하나는 피해자 특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 경우 먼저 손해 발생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판단은 합리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후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관련 공무원 여기서는 공보관사의 과실의 인정 여부이다. 법령 및 내규의 규정상 비실명화작업의 직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한편 관련 공무원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법령상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 전자의 판결처럼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적은 액수이나마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판결이며 법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판결문 공개작업에 만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판결문 공개, 비실명화작업, 비실명화작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국가의 민사책임, 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한 의무

*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 법학박사.

[Abstract]

A Study of Country's Civil Responsibility by Means
of the Work for Opening Decision

Kim, Hong-Wha*

These days the public impassionedly demands for opening decision.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would be ready to open decision through such a work. By means of software system, being prepared with sincerity, it will raise doubts whether it will be perfectly ready for it or not. Nothing in this world is perfect.

There are actually two decisions which one is to accept plaintiff's claim, the other is not owing to defendant's torts. It mean it will occur to this issue at all times. And if opening decision accomplished, the lawsuit the plaintiff demand compensation will dramatically increase.

To Judge on acknowledgement to compensate, it needs occurrence of damage. Second it's whether defendant' fault is or not. The test is that there is duty to protect victim' self-determination or not. On the base of law and bylaw, it is fully to admit to get a duty.

Meanwhile in case related public servant's act looks like country's act, Is that possible to hold country's responsibility on State Compensation Act. Demanding for gross negligence, it's not possible that it is very hard to admit gross negligence.

Nevertheless the recent decision it accept plaintiff's damage is enormously meaningful and the its conclusion helps country more carefully make open decision's works.

Key words : Opening Decision, Civil Liability, The Duty to Protect Victim's,
Self-Determination, Country's Responsibility on State Compensation
Act

* Research Commissioner in Supreme Court.